

[별표

4의2]

<개정

2010.9.17>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

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을 초

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 의 재

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 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 정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

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 항공기의

재 산 세 과 세 표 준 금 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

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

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

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

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

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

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

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간별 점수표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6구간		7구간			5구간

	남	20세	60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
	-	-				
	성	미만,	이상	30세 미만,	50세 미만	
		65세	65세	50세 이상	(6.6)	
		이상	미만	60세 미만		
		(1.4)	(4.8)	(5.7)		
가입자의	여	20세	60세	25세 이상	20세 이상	-
	-	-				
성 및	성	미만,	이상	30세 미만,	25세 미만,	
연령별		65세	65세	50세 이상	30세 이상	
		이상	미만	60세 미만	50세 미만	
		(1.4)	(3.0)	(4.3)	(5.2)	
재산(만원)	450 이하	450 초과	900 초과		1,500 초과	
3,000 초과	7,500	15,000				
	(1.8)	900 이하	1,500 이하		3,000 이하	
7,500 이하	초과	초과				
		(3.6)	(5.4)		(7.2)	(9.0)
	15,000	(12.7)				
	이하					

	(10.9)				
자동차	6만4천원	6만4천원	10만원	22만4천원	40만원
(연간세액)	이하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3.0)	10만원	22만4천원	40만원	55만원
	66만원	(21.3)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6.1)	(9.1)	(12.2)	(15.2)
	(18.3)				
비					고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

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 니 한 다 .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10,6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 11,2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 11,9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 12,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 13,4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 14,2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 15,0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 15,800 이하	780	50	15,000 초과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 16,600 이하	809	51	15,800 초과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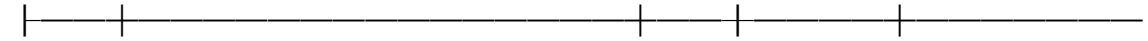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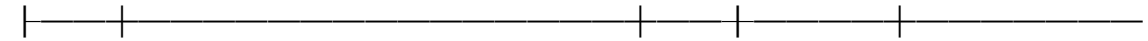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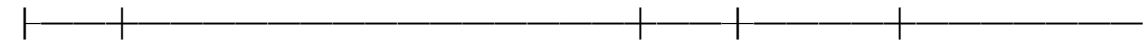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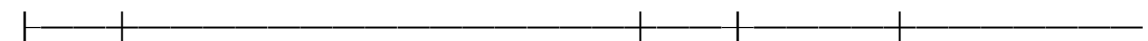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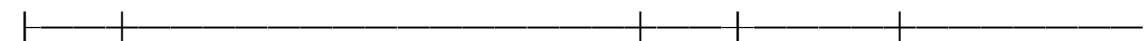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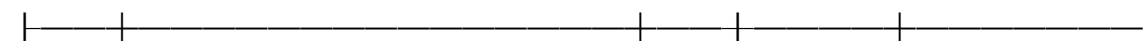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73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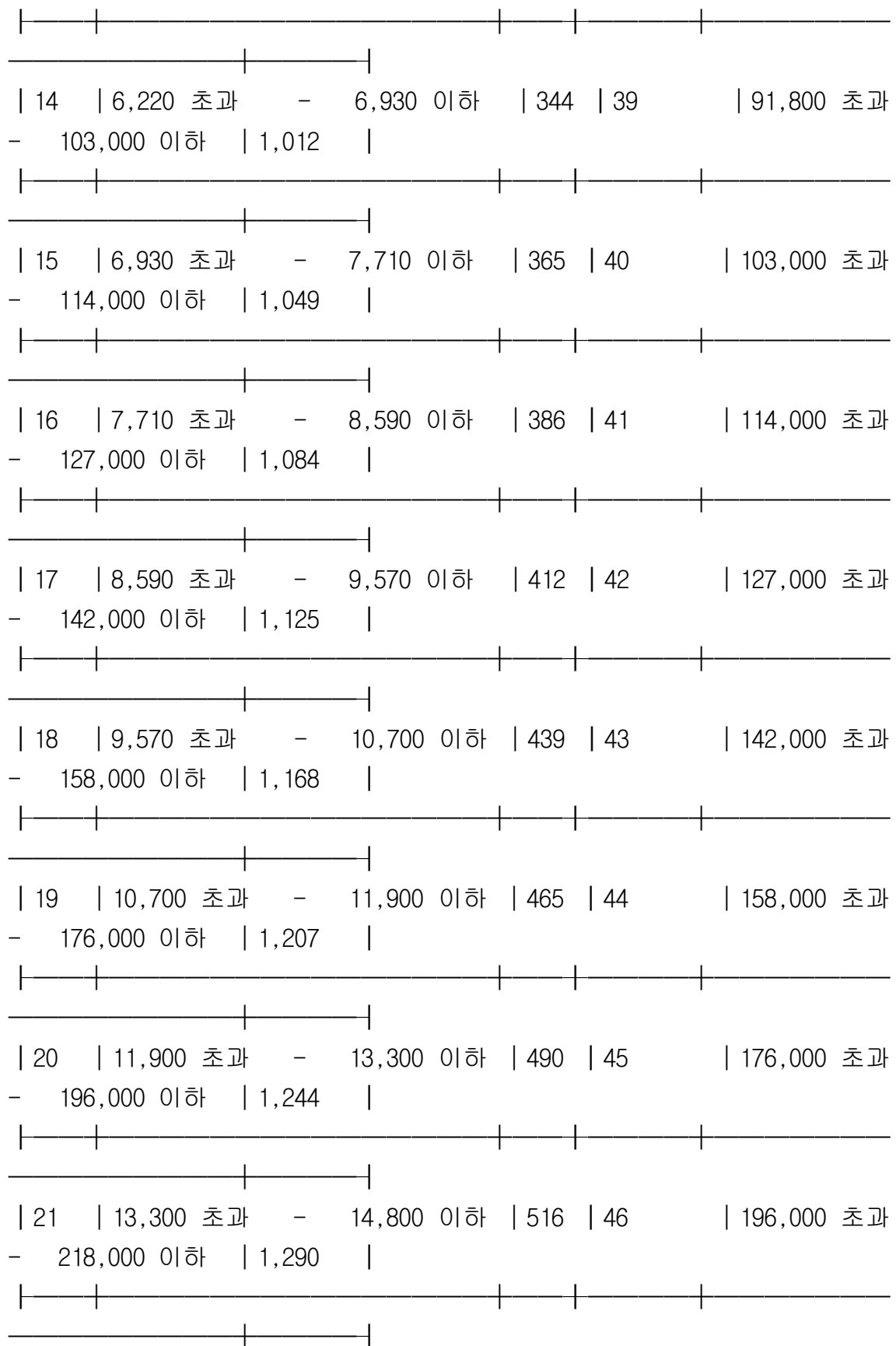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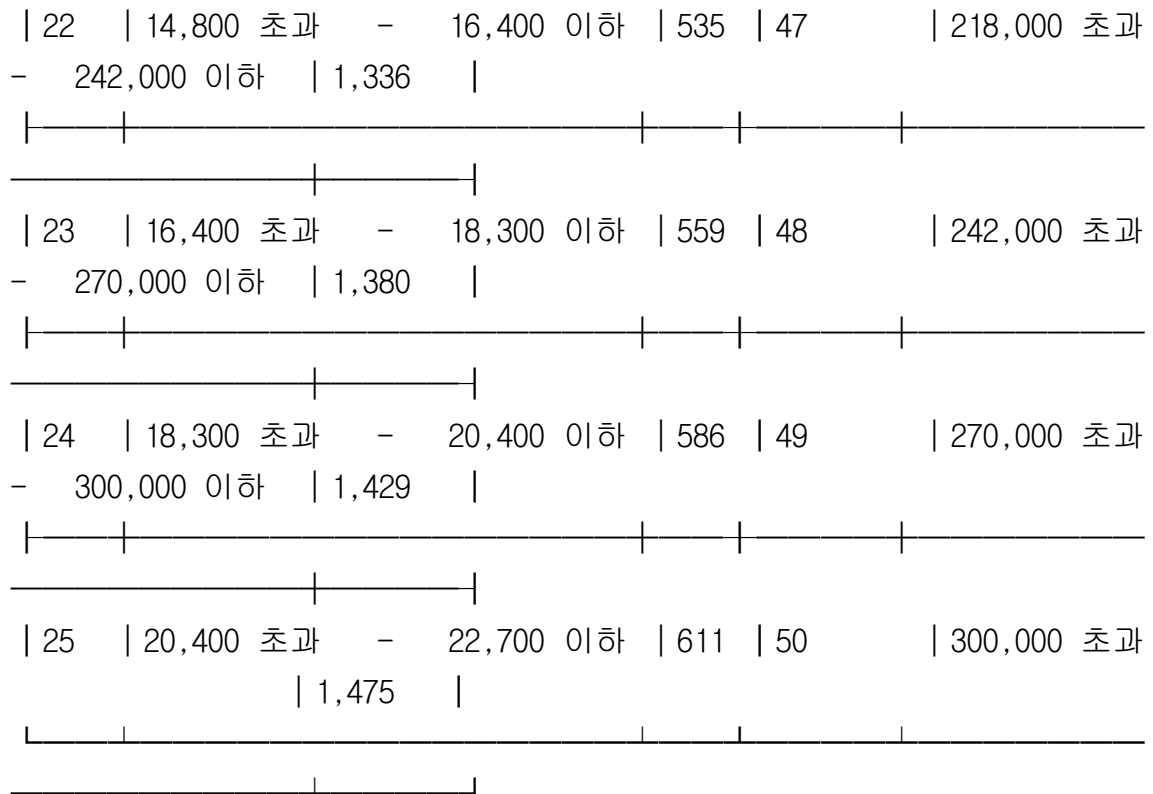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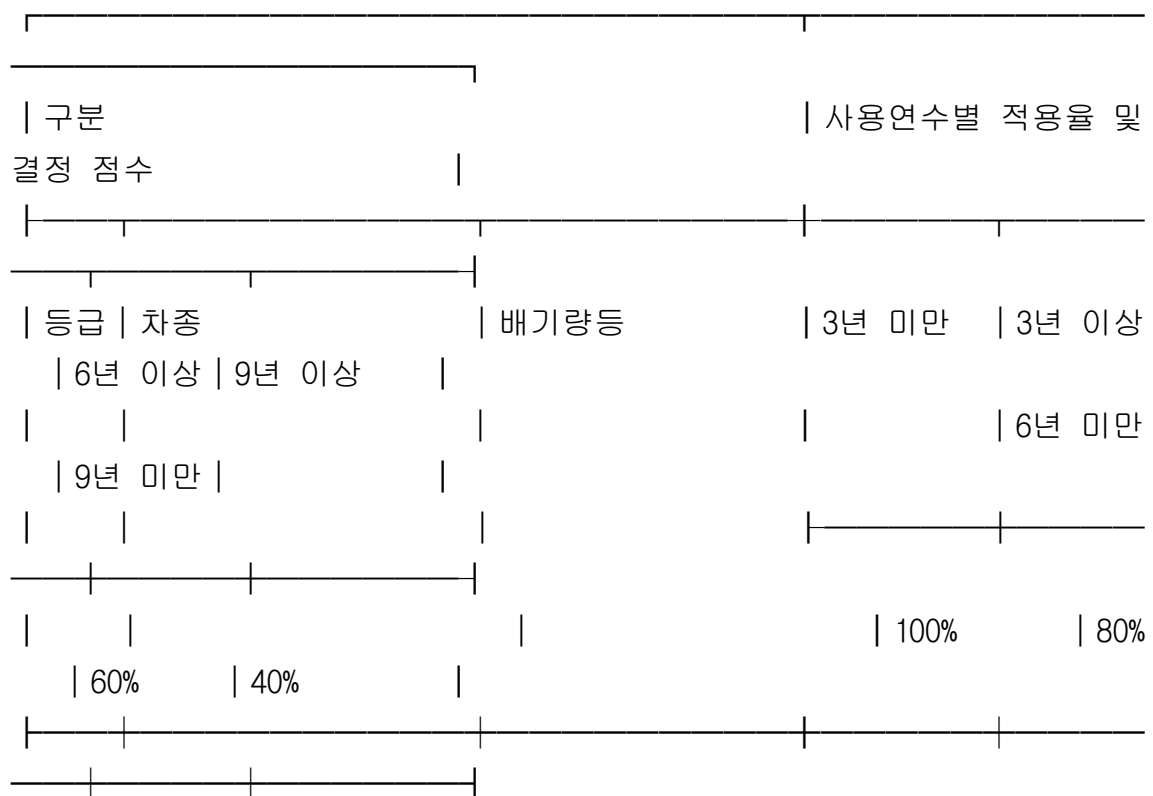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9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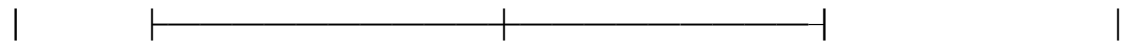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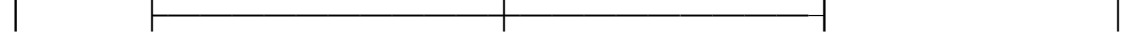
4. 자동차등급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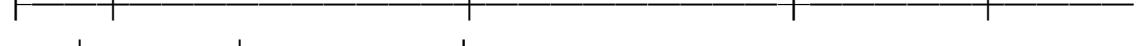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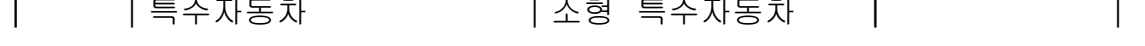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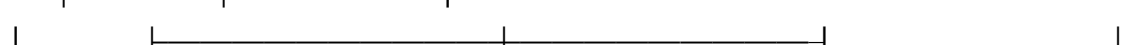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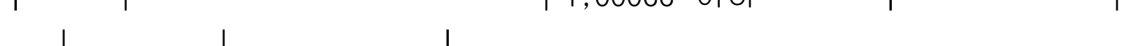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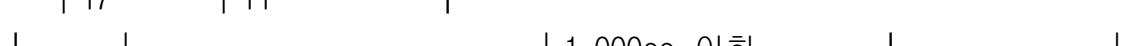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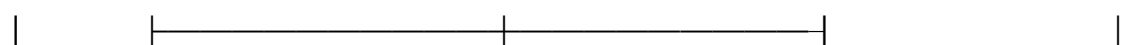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28	23
17	11			

		1,000cc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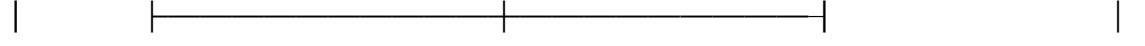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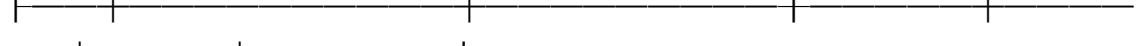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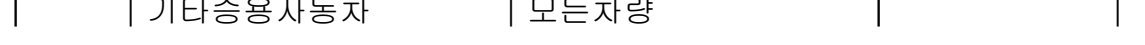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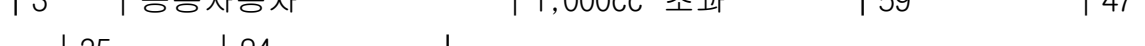
		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59	47
35	24			



The figure displays 12 horizontal bar chart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vehicle category. The x-axis for each chart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vehicles in that category, with the total percentage indicated at the bottom of the chart. The categories are as follows:

- 1,600cc 이하
- 승합자동차
- 대형 일반버스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5톤초과
- 특수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승용자동차 (2,500cc 이하)
-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승용자동차 (3,000cc 이하)

The total percentages for each category are:

- 1,600cc 이하: 113%
- 승합자동차: 68%
- 대형 일반버스: 45%
- 화물자동차: 90%
- 적재정량 5톤초과: 113%
- 특수자동차: 124%
- 대형 특수자동차: 124%
-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93%
-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62%
-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155%
-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124%
- 승용자동차 (2,500cc 이하): 186%
-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149%
- 승용자동차 (3,000cc 이하): 111%
-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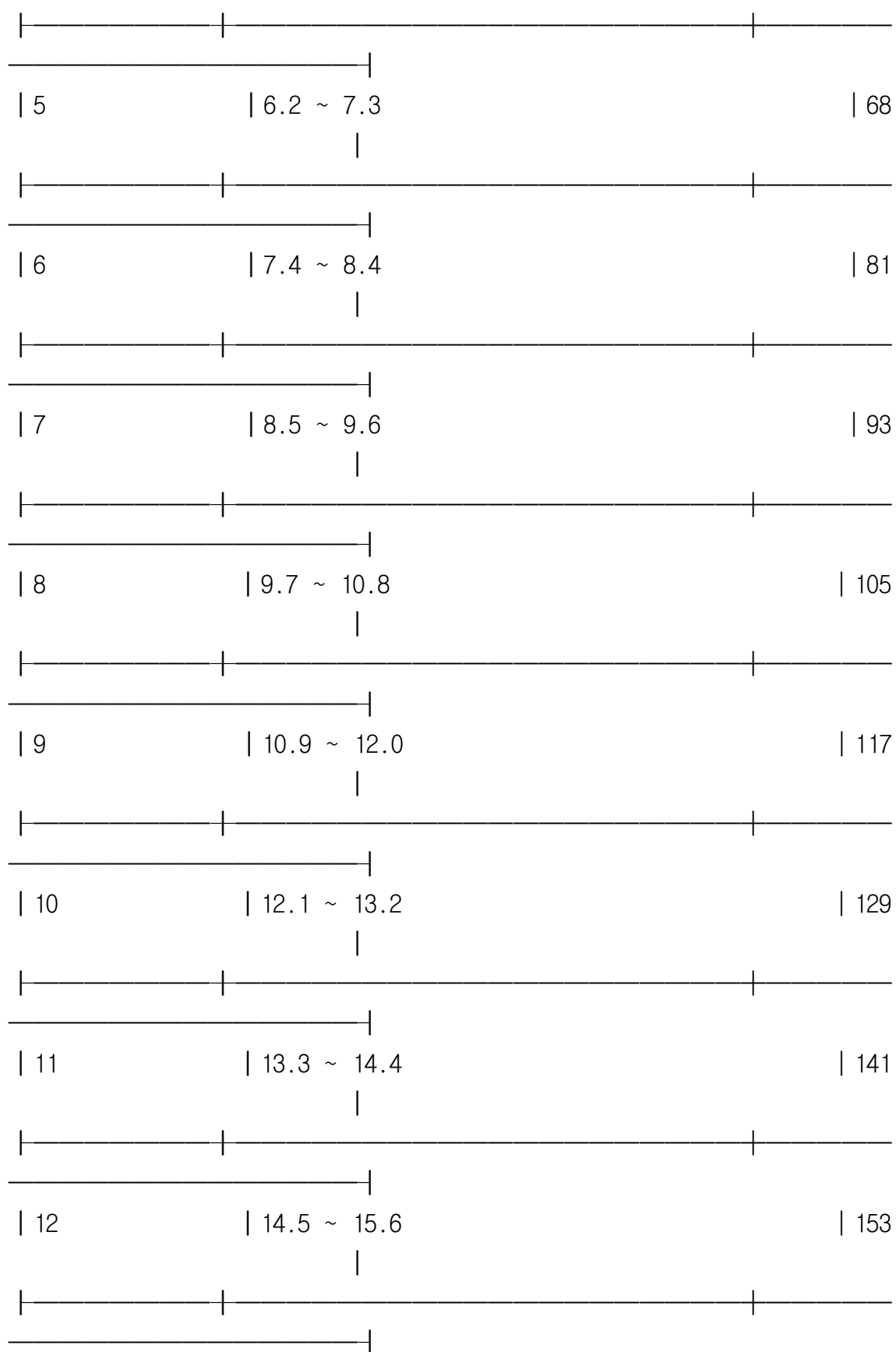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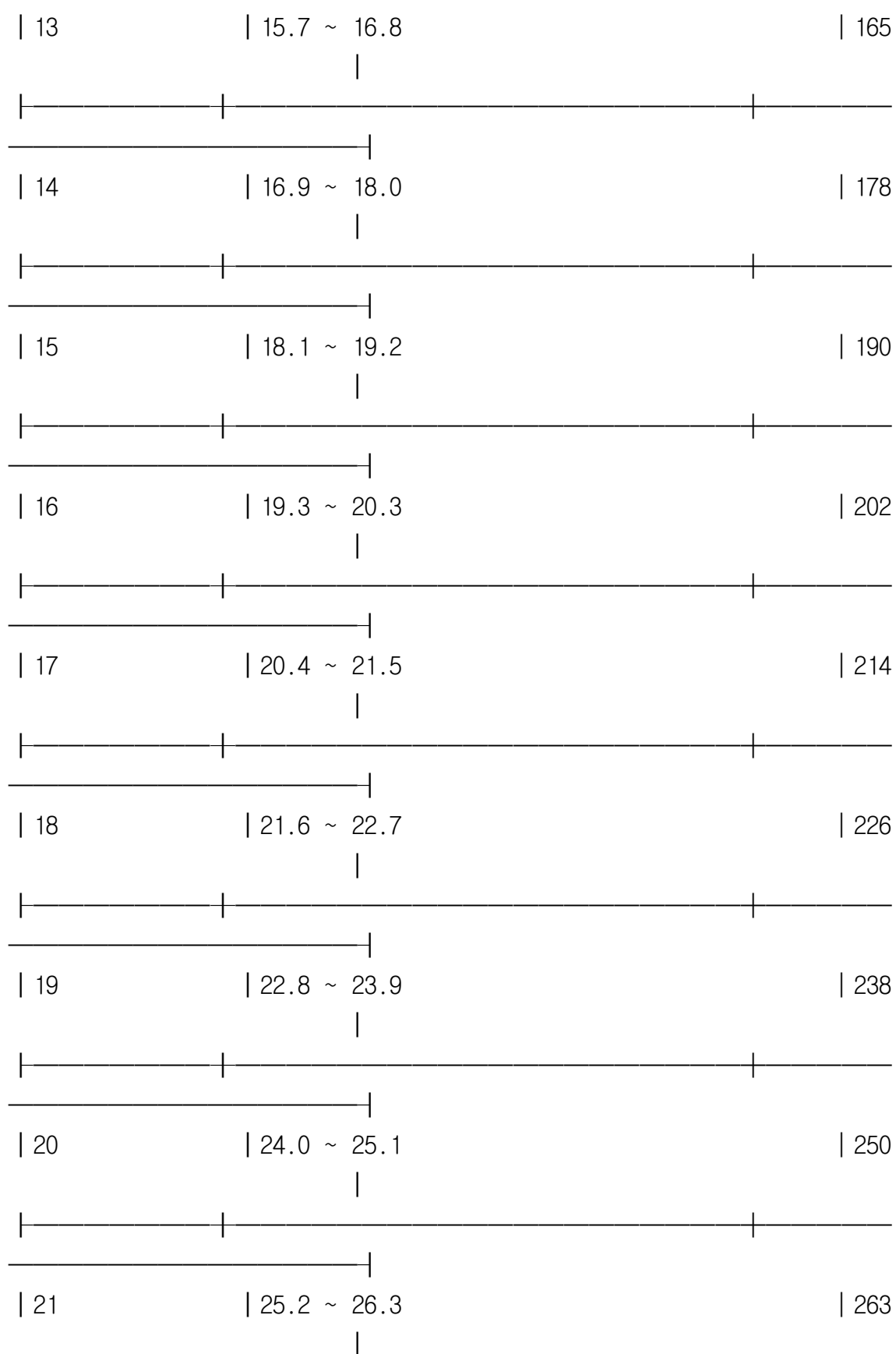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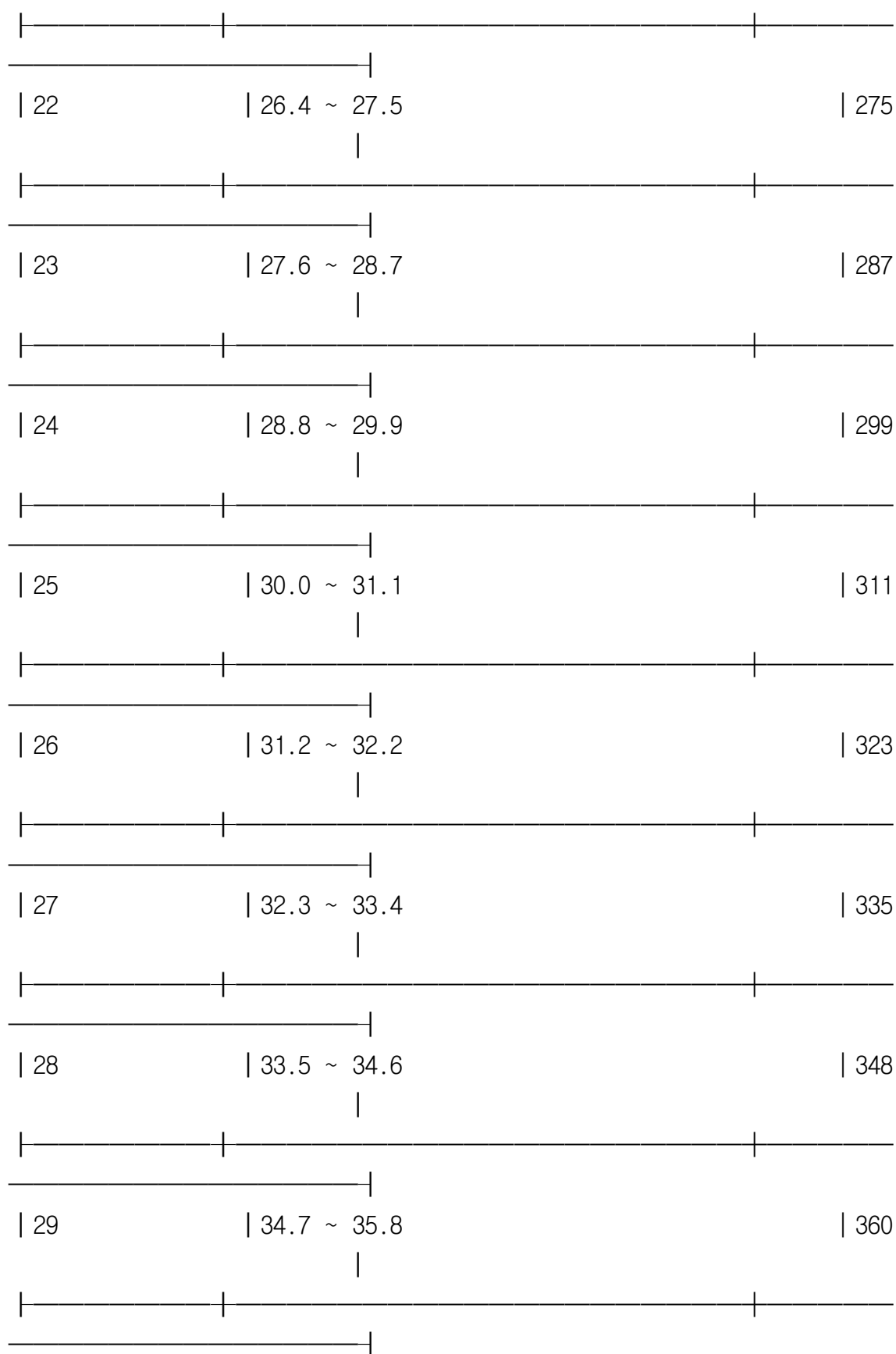
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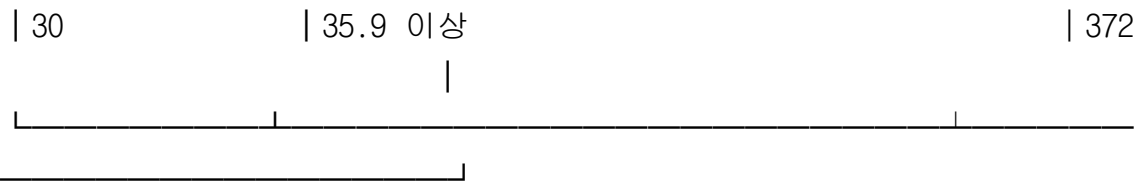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